

제14조 (정족수)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회원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 위임장 제출 회원은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 4 장 사 무 처

제15조 (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하며 공무원 1급상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공동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지방자치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의견 제출
4.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등과의 협력
5. 시·군·구의 공동 현안과제의 발굴 및 추진
6. 시·군·구간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7.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 개발
8. 지방자치발전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관리
9.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7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대표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재원) 협회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제19조 (부담금) ① 부담금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 ② 부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 및 결산) ① 협회회의 세입·세출예산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회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 (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회회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 : 25개구 가입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관심사를 협의·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8.28>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서울특별시 현직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내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 1.25>

1. 각 자치구의 사무에 있어서의 연락조정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3.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입안 및 추진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임 원 및 운 영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2012. 6.28 개정>
2. 회 장 1인(단, 회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임 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별도의 회장 1인을 따로 둘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7.12>
3. 부회장 4인<개정 2007. 8.28>
4. 사무총장 1인 <2010.10. 8>

제7조(임원의 선출) ① 고문,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권역별로 1인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 8.28>

1. 서북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2012. 5.24 개정 동대문구 동북권으로 변경>
2.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012. 5.24 개정>
3.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4.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제8조(임원 및 회원의 임무) <개정 2005. 1.25>

- ① 회장은 본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회의 회장직을 겸임한다. (단,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 회장을 둘 경우에는 그가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서신설 2005. 7.12>
- ② 고문은 회장에게 본회의 임무에 관하여 자문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임무를 대행하며, 권역내의 연락을 취하고 또 일반 회무를 심의하고, 긴급 안전의 처리를 담당한다.<개정 2007. 8.28>
- ④ 사무총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대변한다. <2010.10. 8>
- ⑤ 임원 및 회원은 각자가 품위를 지켜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 노력한다.
- ⑥ 협의회 사무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구의 기획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신설 2005. 1.25>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8. 4. 29 개정, 2009. 6.30 개정>

-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1. 정기회 :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2010. 9.14>
2. 임시회 :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1조(협의사항 등) 본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결정·건의 또는 제시 등을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2.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타기관 등에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의견 제시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통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권고
4. 기타 본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 및 조정) ① 총회는 회장에게 위임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 ② 일부 회원에 국한된 사항은 관련 회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협의·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소속 자치구의 일반회비
2. 자치단체의 공동 또는 개별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금

<전문개정 2005. 1.25>

제15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의 참석시 또는 지정된 온라인 통장에 매월 입금한다.

제16조(지출) ① 회원이 납부한 일정회비 중 일정액 이상은 정기에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며, 적립된 금액은 본회의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매월 정기적립하고 남은 수입금 중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하고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경비
2.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
3. 삭제 <2007. 8.28>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7조(준용)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5. 1.25>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른다.

부 칙(2005. 1.25)

제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 이전의 집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6.>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로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6.>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 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6.>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 12. 8.>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4. 소관업무별 협의회 가입현황

연번	해당부서	협의회 명	예산액 (단위:천원)
1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2,000
2	기획예산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000
3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시구청장협의회	4,000
4	일자리경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2,000
5	일자리경제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10,000
6	가정복지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5,000
7	교육청소년과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4,000
계			22,900